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작성요령포함》

2024. 3.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I.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2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21호, '23.12.28.)」에 의하여 우리 사무소(예산국토)에서 정한 기준으로서 입찰공고 기간 중 배포, 공개 또는 열람토록 하고 평가 시 이 기준에 따른다.
 - * 건설엔지니어링의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2.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근거하여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 중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결과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입찰에 참여하고자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붙임의 현황을 별지로 작성하여 공문과 함께 제출하고, 평가자료 작성 시에는 동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복도·해외설계수행실적·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인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 등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3호, 2024.1.5.)」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예산국토 소속직원 또는 외부위원 3인 이상)를 구성·운영하며 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 가. 평가기준 적용의 적정성
 - 나. 기타 발주청의 장이 평가위원회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수행능력(PQ) 평가결과가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1690호, 2023.12.28.) 제4조제4항에 따른 기준점수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7.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선정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중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8.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재정상태 건설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설계 수행실적·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PQ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이하는 반올림한다.
9. 평가 시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집행계획)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 등은 소수점 둘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0.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11.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12.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사업의 총건설엔지니어링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13. 평가기준의 배포는 인터넷 게시(사무소 홈페이지 → 공지사항)로 같음하며, 배포된 평가기준에 수정·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인터넷 게시로 같음한다.
14.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스스로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문서 및 평가서에 첨부하여 제출한다.(참여기술인 경력, 실적 등 평가점수 산출근거는 반드시 평가서에(원본, 사본 포함) 첨부, 업무중복도 평가자료는 일반에 공개하여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전자파일로 제출할 것)

15.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원본대조필 확인 각서(양식 9)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II.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 평가

가. 참여기술인은 입찰(집행계획)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중인 자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자에 한한다.

나. 입찰(집행계획)공고일 현재 참여기술인의 최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간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점수(등급,경력,실적)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 점수를 산출한다.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이적계수의 적용을 제외한다.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 0.95

- 최근 이적기간 3개월이상 6개월미만 : 0.98

- 최근 이적기간 6개월이상 : 1.0

※ 직전소속회사에서 확인하는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퇴직증명서 등을 첨부할 것.

다.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점수 배분 가중치는 아래와 같이 적용함

- 도로 및 공항분야 책임(참여)기술인: 0.4, 토목구조분야 책임(참여)기술인: 0.3

- 토질·지질분야 책임(참여)기술인: 0.3

라. 참여기술인의 등급 평가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3호, 2024.1.5.)」에 의거 산정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의 역량지수별 등급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마.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

(1) 사업책임기술인 및 도로 및 공항분야 책임(참여)기술인

(가) 도로사업 설계(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경력 중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포함, 이하 “국토교통부”라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지방자치단체, 한국도로

공사에서 발주한 설계건설엔지니어링경력, 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중 전문분야가 도로 및 공항인 경력 : 100%

(나) 기타 도로사업 건설엔지니어링(연구용역 포함)중 도로 및 공항 분야
경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사업 공사·설계 감독관련 업무
및 관리자경력 중 전문분야가 도로 및 공항인 경력 : 80%

(다) 국가(지방자치단체 포함) 및 공공기관의 도로사업 계획경력, 도로사업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또는 안전관리)[舊 시공감리, 책임감리
(상주)] 경력, 도로사업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舊 기술지원 감리]경
력, 도로사업 시공경력, 건설관련업체 관리자경력, 학교·교육기관
의 도로의 강의경력 : 60%

(2) 토목구조분야 책임(참여)기술인

(가) 도로사업 설계(연구용역 포함)경력 중 전문분야가 토목구조인 경력 : 100%

(나) 기타 토목분야 설계(연구용역 포함)경력 중 전문분야가 토목구조인
경력 : 80%

(다) 도로사업 설계(연구용역 포함)경력 중 토목구조 이외의 분야, 도로사업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또는 안전관리)[舊 시공감리, 책임
감리(상주)] 경력, 도로사업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舊 기술지원 감리]경력,
도로사업 시공경력, 건설관련업체 관리자경력, 학교·교육기관의
토목구조분야 강의 경력 : 60%

(3) 토질·지질분야 책임(참여)기술인

(가) 도로사업 설계(연구용역 포함)경력 중 전문분야가 토질·지질인 경력 : 100%

(나) 기타 토목분야 설계(연구용역 포함)경력 중 전문분야가 토질·지질인
경력 : 80%

(다) 도로사업 설계(연구용역 포함)경력 중 토질·지질 이외의 분야, 도로
사업 설계 및 공사 감독관련업무, 도로사업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또는 안전관리)[舊 시공감리, 책임감리(상주)] 경력, 도로사업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舊 기술지원 감리]경력, 도로사업 시공경력, 건설
관련업체 관리자경력, 학교·교육기관의 토질·지질분야 강의 경력 : 60%

바.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 시 근무경력의 인정범위

- (1) 상기 “마”항의 경력중 학교·교육기관의 강의경력을 제외한 참여기술인의 경력인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에 의거 발주청에서 시행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로서 해당 경력은 발주청, 참여분야 등에 따라 “마”항 기준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 (2) 도로의 건설 또는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발주기관 근무경력중 개인 경력확인서에 감독관련업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명 또는 공사명이 명확히 기재된 경력에 한하며,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청, 사업명 등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 되어 있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 (3) 발주청에서 시행한 건설엔지니어링 또는 공사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에 한한다.
- (4) 일정 기간 내에 서로 상이한 건설공사업무 수행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기간을 중복사업 건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주요경력/참여기간(인정일)중 “인정일”로 계산<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3호 건설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별표3] 건설기술인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등 2. 자격·학력·경력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 “다”항 적용>
예) 1990.1.1 ~ 1990.6.30(80일) → 80일 적용
- (5) 건설관련업체 관리자 경력 인정은 경력확인서에 관리업무를 수행한 도로건설공사 등의 사업명이 명확히 기재된 경력에 한하며,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청, 사업명 등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 되어 있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 (6) 참여기술인의 경력산정시 현재 수행중인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舊 기술지원 감리 (전체분이 준공되지 않은 경우)는 경력 산정에서 제외한다.

사.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 기준

- (1)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이하 “국토교통부”이라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광역자치단체, 해당 공공기관(이하 “해당 공공기관”이라 한다. -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도시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서 발주한 참여기술인의 아래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단일 도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중 해당 분야에 참여하여 최근 10년[입찰(집행계획) 공고일 기준]내에 전체 준공(장기계속의 차수준공은 제외)한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에 대하여 평가한다. 단, 위 해당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철도(고속, 일반, 도시), 활주로 건설공사 엔지니어링(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한함)은 아래 “(다)”항과 같이 인정한다.

※ 단, 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

(가) 실시설계

- ① 국토교통부, 해당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연장 4.0km이상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
- ②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한 연장 8.0km 이상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
- ③ 교량 또는 터널 1개소의 연장이 500m 이상인 사업(2차로 이상의 신설, 확장인 경우에 한하며, 보수,보강,성능개선 등은 제외)
- ④ 내진, 보완, 변경 설계용역 등은 건설엔지니어링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

(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및 기본설계의 경우 전체 건설엔지니어링 금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예비타당성조사용역은 제외)

(다) 건설엔지니어링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철도(고속, 일반, 도시), 활주로 건설공사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의 해당분야(사업총괄 및 도로분야는 제외)에 참여한 실적은 40%를 인정한다.

(2) 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공사(실시설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에 한하며,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

(3) 시공분야 참여기술인의 설계참여실적은 위 기준을 적용(참여분야 무관)하되, 평가대상기간(공고일기준 최근 10년이내)에 해당하는 기간만 인정하고, 시공참여 실적은 총공사금액 300억원 이상인 도로공사에 대하여 동일 사업에 최소한 1년 이상 참여[시공,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또는 안전관리[舊 감리, 관리감독]한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여 각각의 건수를 합산하되, 설계 참여실적 및 시공참여실적의 인정건수 계산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설계참여 실적 적용례>

(평가대상기간에 해당하는 설계수행기간÷ 총계약기간)× 1건

<시공참여 실적 적용례>

참여년수 × 3건

1년이상 2년미만 참여시 : 3건, 2년이상 3년미만 참여시 : 6건
3년이상 4년미만 참여시 : 9건, 4년이상 5년미만 참여시 : 12건,
5년이상 참여시 : 15건

- (4)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의 총 사업건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5) 설계실적 평가시 참여기간은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6)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시 발주청의 건설엔지니어링 관리감독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 해당분야 실적으로 인정한다.

아.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기준(5억미만 시 제외)

- (1) 사업책임기술자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에 대한 평가를 위해 발주청에서 제시한 과업내용을 참고하여 첨부1에 맞춰 작성, 공문에 첨부하고 별도로 5부를 제출해야 한다.(흑백출력 제출, 평가서 미제출시 해당 항목 0점 처리, 제한 페이지수를 초과할 경우 1페이지당 총점에서 0.1점 감점, 칼라 출력한 경우 1페이지당 총점에서 0.1점 감점)
- (2)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배점범위 내에서 아래 [참여회사수별 배분율]에 따라 상대 평가한 후 평가위원들의 합계 점수를 산술 평균한다.

[참여회사수별 평가등급 배분표]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자.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차. 전차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

- (1)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범위는 입찰(집행계획)공고일 기준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전 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을 준공한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엔지니어링, 실시설계 엔지니어링(보완설계 건설엔지니어링인 경우),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舊 설계감리]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한다.
- (2)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경과기간은 평가대상사업 입찰(집행계획)공고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준공년도의 경과에 따른 비율은 아래의 각 항과 같이 적용한다.
 - (가)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3년 미만 : 100 %
 - (나)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3년 이상 5년 미만 : 80 %
 - (다)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5년 이상 : 0 %
- (3)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업체가 공동도급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지분율을 반영하며,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연장 등 사업규모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상이할 경우 연장비율(작은규모사업/큰 규모사업)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노선의 연장이 전차건설엔지니어링 노선의 연장보다 작더라도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노선에 모두 포함되는 경우 100% 인정한다.

- (4)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책임기술인에 대한 평가는 과업기간에 대한 참여기간 비율 및 사업규모에 대한 연장비율을 반영한다.
- (5) 본 과업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의 취득 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 (6)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한해서, 하도급을 받은 비율(하도급금액/원도급자 전체 건설엔지니어링계약금액)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 (7) 해당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중이거나 완료되지 않은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은 발주청이 발행한 실적증명서(기성율 확인)를 첨부한 경우 기성율만큼 실적을 인정한다.
- (8)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 2개이상 중복되어 해당될 경우 해당업체에 유리한 1개 분야만 적용한다.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을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한다.

2.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가. 참여업체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인정 대상사업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한 아래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단일도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중 최근 5년내(공고일 기준)에 전체 준공(장기계속의 차수준공은 제외)한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에 한한다.(예비타당성조사는 제외) 단, 위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발주한 철도(고속, 일반, 도시), 활주로 건설공사 건설엔지니어링(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한함)은 아래 “(3)”항과 같이 인정한다.

(1) 실시설계

- (가)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연장 4.0km이상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
- (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연장 8.0km 이상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
- (다) 교량 또는 터널 1개소의 연장이 500m 이상인 사업(2차로 이상의 신설, 확장인 경우에 한하며, 보수,보강,성능개선 등은 제외)
- (라) 내진, 보완, 변경 설계건설엔지니어링 등은 용역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
- (마)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의 1종 시설물 중 2차로 이상 특수교량(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 엑스트라도즈교) 사업

(2)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및 기본설계 건설엔지니어링은 전체 건설엔지니어링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예비타당성조사는 제외)

(3) 건설엔지니어링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지하철, 철도, 활주로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한 실적은 40%를 인정한다

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총 사업건수 및 금액으로 각각 평가하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참여 지분비율대로 평가한다.

다. 본 과업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각 참여회사의 실적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해당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기업체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단, “가”항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실적 건설공사에 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사업의 설계를 수행한 실적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의 설계를 수행한 실적은 해당분야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하되, 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의 설계보상 대상자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실적은 낙찰자의 80%로 한다.

다만, 실적금액(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함)은 낙찰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하며, 아래 증빙 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 또는 대안입찰공사의 설계를 수행한 실적은 낙찰자로 결정된 증빙서류와 공사금액을 알수 있는 계약서 등
 - 민간투자사업의 설계를 수행한 실적은 사업시행자 지정공문 사본, 공사금액을 알 수 있는 서류 등, 사업시행자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간에 체결한 계약서류 사본, 사업시행자가 확인한 설계완료 증빙자료
- 마. 해외실적의 경우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건설엔지니어링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해외실적의 경우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은 건설엔지니어링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관련자료 미제출시 평가제외)
- 바. 전차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한 평가는 II.1.차항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을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배점에 합산한다.

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 (1)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라 참여업체가 최근 5년내[입찰(집행계획) 공고일 기준] 5개(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국토관리청에서 수행한 도로 분야 설계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의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한다.

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점수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 (2) 최근 5년내 건설엔지니어링평가를 받은 대상 건설엔지니어링을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 참여한 업체 각각 동일하게 평가점수를 적용한다.
(적용예) A사, B사, C사가 00도로건설공사 건설엔지니어링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결과 90점을 받은 경우
→ 건설엔지니어링평가결과 심사 시 00도로건설공사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결과 점수는 A사 90점, B사 90점, C사 90점으로 적용

(3) 5개(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를 받은 실적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중간점수(1.6점)를 부여한다.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적용례

1. 컨소시엄별 참여비율 및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점수

구 분	1번 컨소시엄			2번 컨소시엄		3번 컨소시엄		
	A사 (40%)	B사 (30%)	C사 (30%)	D사 (60%)	E사 (40%)	F사 (60%)	G사 (20%)	H사 (20%)
업체별 평균점수	94.83	92.22	89.31	92.85	실적 없음	90.00	89.53	실적 없음
적용점수	94.83	92.22	89.31	92.85	89.00	90.00	89.53	89.00

2. 컨소시엄별 유사수행성과 점수

- 1번 컨소시엄 : $94.83 \times 0.4 + 92.22 \times 0.3 + 89.31 \times 0.3 = 92.39 \Rightarrow 1.8\text{점}$
- 2번 컨소시엄 : $92.85 \times 0.6 + 89.00 \times 0.4 = 91.31 \Rightarrow 1.6\text{점}$
- 3번 컨소시엄 : $90.00 \times 0.6 + 89.53 \times 0.2 + 89.00 \times 0.2 = 89.71 \Rightarrow 1.6\text{점}$

3. 신 용 도

가. 영업정지(업무정지), 부실벌점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참여지분율을 적용하여 합산한 후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 참여기술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3) 참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설계 등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감점(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하며, 세부 기준은 배점표 참조)

(4) 본 과업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평가는

업체별 각각의 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평가하고,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는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계산예) 2개사가 50:50의 비율로 공동도급으로 참여하고 이중 1개사가 업무정지 등 제재 1개월이 있는 경우
 : $(0.2\text{점} \times 0.5) + (0\text{점} \times 0.5) = 0.1 + 0 = 0.1\text{점}$

나. 재정상태 건실도

- (1) 재정상태 건실도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집행계획)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3) 신규·합병·분할·사업양수·양도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4)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가. 개발실적 평가

- (1)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로서 도로분야와 관련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하며,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가) 건설신기술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

(나)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실용신안은 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하며, 선 등록인 경우는 불인정. 제출서류로서 동 내용의 확인이 불가할 경우 불인정

(다) 특허등록결정, 실용신안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라)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나. 투자실적 평가

- (1)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가) 회사설립년수가 부족한 경우로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로 평가함.(2년간합계액/2, 1년간합계액/1)

- (나) 신규 설립된 회사로서 투자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배점의 60%로 평가
- (2)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 (3) 해당 설계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 (4) R&D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한다.
- (가) R&D사업 참여 실적은 「국토교통부소관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1708호, 2024.1.22.)」 제2조2호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첨부4)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해당 연구개발사업(과제)의 중간 및 최종 평가시 「국토교통부소관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1708호, 2024.1.22.)」 제36조 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연구개발과제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나) 주관연구개발기관, 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라 함은 각각 「국토교통부소관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1708호, 2024.1.22.)」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기관 및 기업을 말한다.
- (다) 「국토교통부소관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1708호, 2024.1.22.)」 제20조에 따른 “기획연구” 과제에 대한 참여실적은 R&D사업 참여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라) 참여건수는 해당기업이 입찰(집행계획)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내에 현금부담금액을 대기업 5,000만원, 중소기업 1,000만원 부담이 완료된 사업(과제)에 한하여 인정(연차별 과제 협약종료일 기준으로 하며, 종료과제의 경우 최종평가일 기준)한다.
- (마) 참여실적 인정은 해당기업이 위(3)의 조건을 만족한 시점부터 3년간 인정하되, 전체 연구기간 중 1회만 인정한다.

다. 활용실적 평가

-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사에 반영되어 실제 활용(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있어야 한다.
- (2)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만료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동 기간내에 실제 활용(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4)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라.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각 참여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5. 업무중복도 평가

가. 참여기술인이 현재 수행중인 국토교통부,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한 도로 및 하천, 철도, 지하철, 공항관련 분야의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이 적용된 건설엔지니어링을 대상으로 한다.

나. 본 과업과 중복되는 대상 사업은 입찰(집행계획)공고일 이후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것에 한하여 적용하며, 업무중복도는 참여중인 쏘 전문분야(해당 전문 분야외의 타 전문분야에 참여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 단, 사후환경조사, 사후지하안전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사후환경 조사는 업무중복도 대상에서 제외.

다.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 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한다. (단, 해당 발주청이 확인한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용역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다만,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발주시점과 상관없이 고시금액 이상인 건설 엔지니어링에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한 경우(중전 고시 제2013-91호 기준 준용), 국토교통부 고시(제2014-270호) 시행일 이후 발주된 고시금액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우(단, 시행일 이전에 발주된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의 경우라도 시행일 이후에 투입된 경우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해당), 해당 건설 엔지니어링의 발주시점 및 건설엔지니어링 규모(금액)와 상관없이 시행일 이후 투입된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우를 중복기간으로 산정한다.

라.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의 잔여과업기간 산정시 각 분야별 책임(참여) 기술인의 잔여과업기간에 아래 각 항의 가중치를 곱하여 합산한 후 산정된 합산기간에 대하여 평가한다.

- (1) 도로 및 공항분야 책임(참여)기술인 : 0.5
- (2) 토목구조분야 책임(참여)기술인 : 0.25
- (3) 토질·지질분야 책임(참여)기술인 : 0.25

마. 업무중복내용은 당해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 기술인)이 참여중인 '가'항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해당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기관(발주청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조회과정에서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당해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한다. (단, 누락된 건설엔지니어링의 과업기간을 합산 평가하여 점수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기술인 중복도 점수를 0점 처리한다.)

※ 업무중복도 작성자료(양식5)는 파일로 별도 제출(CD 1부, 한글파일)

- 한글파일은 동일 용역에 참여하는 업체 간의 공개검증 자료로 활용하므로 반드시 수정이 불가능한 배포파일로 작성 제출할 것

바.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실무기술인의 총 인원수는 최대 20인 이하로 제한하며, 낙찰자로 선정되면 입찰에 참여한 실무기술인에 한하여 과업에 참여할 수 있다.)

사.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만 산정하며,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실적관리시스템 (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아.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업무중첩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의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첩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6. 가점 평가

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 후 발급한 자료로만 평가하되, 공동이행방식으로 과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한다.

나.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집행계획)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업체 재직 중인 자로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 없는 자)에 한함.

다.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에 따라 가점부여 함.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라. 젊은 기술인(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 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 5% 이상 : 0.2점
- 3% 이상 : 0.15점
- 1% 이상 : 0.1점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배점표)

1.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평가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총 계			100						
가.참여 기술인	계		50						
	(1)사업 책임기술인	소 계		15 (15)					
		등 급	절대평가	3 (3)	특급	고급	중급 이하		
					3.0	1.5	0		
		경 력	절대평가	4 (4)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4.0	3.6	3.2	2.8	2.4
					※ 경력이 만점기준의 50%에 미달하는 경우는 0점 처리				
		실 적	절대평가	5 (8)	10건이상	10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7건이상	7건미만
					5	4.5	4.0	3.5	3.0
					※ 실적이 만점기준의 50%에 미달하는 경우는 0점 처리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 능력	상대평가	3 (-)	수	우	미	양	가
	3.0				2.7	2.4	2.1	1.8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미제출 시 0점 처리 (5억 미만 소규모 용역 시 평가 제외)				
					(5억 미만 소규모 용역 시 () 안 배점 적용)				
	(2)분야별 책임기술인	소 계		19	분야별책임기술인의 가중치 고려한 점수 합계				
등 급		절대평가	4	고급이상	중급	초급이하			
				4.0	3.0	0			
경 력		절대평가	7	10년이상	10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7.0	6.3	5.6	4.9	4.2	
				※ 경력이 만점기준의 50%에 미달하는 경우는 0점 처리					
실 적		절대평가	8	10건이상	10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7건이상	7건미만	
	8.0			7.2	6.4	5.6	4.8		
	※ 실적이 만점기준의 50%에 미달하는 경우는 0점 처리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평가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가.참여 기술인	(3) 분야별 참여기술인	소 계		14	분야별참여기술인의 가중치 고려한 점수 합계												
		등 급	절대평가	4	중급이상			초급이하									
					4.0			0									
		경 력	절대평가	5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5.0	4.5	4.0	3.5	3.0								
		실 적	절대평가	5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5.0				4.5	4.0	3.5	3.0									
	소 계			2													
	(4) 교육훈련		절대평가	1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 ※ 교육인정 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2조(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 제1항 각호에 한하여 인정 ※ 각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위 2개 항목 중 유리한 1개 항목만 적용 ※ 1주 : 일 7시간 교육×5일(35시간) 												
	(5)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절대평가	1 (0)	<p><참여기술인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수행정도에 따라 평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전차건설엔지니어링 사업책임기술인</th> <th style="text-align: center;">전차건설엔지니어링 도로분야 책임기술인</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당해용역 사업책임기술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0.5</td> <td style="text-align: center;">0.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당해용역도로분야 책임기술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0.5</td> <td style="text-align: center;">0.5</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사업의 타당성조사 20%, 기본계획조사 30%, 기본설계 50%, 실시설계 50%, 건설사업관리(舊 설계감리) 10% 적용 ○ 준공후 경과기간에 따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미만 : 100%, 3년이상-5년미만 : 80%, 5년이상 : 0% ○ 해당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을 진행중인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은 발주청이 발행한 실적증명서(기성율 확인)를 첨부한 경우 기성율 만큼 실적을 인정 ○ 상기 배점에 과업 참여기간 비율 적용 합산 (참여기간 / 과업기간 ×100 = %) 					구 분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사업책임기술인	전차건설엔지니어링 도로분야 책임기술인	당해용역 사업책임기술인	0.5	0.5	당해용역도로분야 책임기술인	0.5
구 분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사업책임기술인	전차건설엔지니어링 도로분야 책임기술인															
당해용역 사업책임기술인	0.5	0.5															
당해용역도로분야 책임기술인	0.5	0.5															
<p>※ () 배점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적용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실적평가 배점 1점을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p>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평가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나. 유사건설 엔지니어링 수행 실적	소 계		15																
	회사의 최근 5년간 유사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실적건수	절대평가	6 (7)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6.0(7.0)	5.4(6.3)	4.8(5.6)	4.2(4.9)	3.6(4.2)										
		(2) 실적금액	절대평가	6	70억이상	70억미만 60억이상	60억미만 50억이상	50억미만 40억이상	40억미만										
					6.0	5.4	4.8	4.2	3.6										
	전차건설 엔지니어링 수행 실적	(3) 수행 실적	절대평가	1 (0)	<p><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수행 정도에 따라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사업의 타당성조사 20%, 기본계획조사 30%, 기본설계 50%, 실시설계 50%, 건설사업관리(舊 설계감리) 10% 적용 ○ 준공후 경과기간에 따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미만 : 100%, 3년이상-5년미만 : 80%, 5년이상 : 0% ○ 해당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을 진행중인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은 발주청이 발행한 실적증명서(기성율 확인)를 첨부한 경우 기성율 만큼 실적을 인정 ○ 공동도급의 경우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을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공동도급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건설엔지니어링참여 지분율을 반영하며,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연장 등 사업규모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상이할 경우 연장비율(작은규모사업/큰 규모사업)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 본 과업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의 취득 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건설엔지 니어링 수행성과	(4) 건설엔지 니어링 수행 평가	절대평가	2	<p>「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라 참여업체가 최근 3년내(공고일 기준) 5개(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국토관리청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결과의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95점이상</td> <td>95점미만 92점이상</td> <td>92점미만 89점이상</td> <td>89점미만 86점이상</td> <td>86점미만</td> </tr> <tr> <td>2점</td> <td>1.8점</td> <td>1.6점</td> <td>1.4점</td> <td>1.2점</td> </tr> </table> <p>* 5개 국토관리청에서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를 받은 실적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1.6점”을 부여</p>					95점이상	95점미만 92점이상	92점미만 89점이상	89점미만 86점이상	86점미만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95점이상	95점미만 92점이상	92점미만 89점이상	89점미만 86점이상	86점미만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평가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다.신용도	소 계			10																								
	(1) 영업정지(업 무정지), 부실벌점	정지기간	절대평가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참여지분율을 적용하여 합산한 후,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1월이하 0.2점, 1월초과 2월이하 0.4점) ○ 참여기술인이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1월이하 0.2점, 1월초과 2월이하 0.4점)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참여기술인에 대한 감점을 합산하여 감점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관련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 규정에 의한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점 1점이상 2점미만 0.2점, 2점이상 10점미만 1점, 10점이상 15점미만 2점, 15점이상 20점미만 3점, 20점이상 5점 ○ 점수계산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업체 : 공동이행으로 용역 참여시는 부실벌점에 의한 감점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산출 - 참여기술인 : 평가대상 기술인의 부실벌점에 의한 감점을 합산하여 산출 																							
					(2) 재정상태 건설도	자본비율	절대평가	3	<p>• 재정상태건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점수</th> <th>3.0</th> <th>2.8</th> <th>2.1</th> <th>0</th> </tr> </thead> <tbody> <tr> <td>회사채</td> <td>BBB-이상</td> <td>BBB-미만 B-이상</td> <td>CCC+이하</td> <td>미제출</td> </tr> <tr> <td>기업어음</td> <td>A3-이상</td> <td>A3-미만 B-이상</td> <td>C이하</td> <td>미제출</td> </tr> <tr> <td>기업신용</td> <td>BBB-이상</td> <td>BBB-미만 B-이상</td> <td>CCC+이하</td> <td>미제출</td> </tr> </tbody> </table>					점수	3.0	2.8	2.1	0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평가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소 계		15						
	(1)개발실적	절대평가	2	1)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건설신기술 : 2.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2)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3)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은 2인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2)투자실적	절대평가	10	· 최근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총매출액)					
				구분	1.50%이상	1.50%미만 1.25%이상	1.25%미만 1.00%이상	1.00%미만 0.75%이상	0.75%미만 0.50%이상
				점수	10.0	9.0	8.0	7.0	6.0
				※ 신설법인으로 투자실적이 없는 경우 배점의 60%로 평가					
(3)활용실적	절대평가	3	1)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2)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건설엔지니어링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있어야 함)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 권리만료 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 건설엔지니어링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단,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활용금액 (억원)	20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평가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마. 업무 중복도	소 계		10						
	(1)사업책임 기술인	절대평가	3	○ 입찰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건설엔지니어링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기간×100)에 따라 평가					
				구 분	200%미만	200%~250%미만	250%~300%미만	300%~350%미만	350%이상
				점 수	3.0	2.7	2.4	2.1	1.8
	(2)분야별책임 기술인	절대평가	4	○ 입찰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건설엔지니어링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기간×100)에 따라 평가					
				구 분	200%미만	200%~250%미만	250%~300%미만	300%~350%미만	350%이상
				점 수	4.0	3.6	3.2	2.8	2.4
	(3)분야별참여 기술인	절대평가	2	○ 입찰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건설엔지니어링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기간×100)에 따라 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만 산정					
				구 분	200%미만	200%~250%미만	250%~300%미만	300%~350%미만	350%이상
				점 수	2.0	1.8	1.6	1.4	1.2
	(4)실무기술인	절대평가	1	○ 입찰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건설엔지니어링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기간×100)에 따라 평가 ○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만 산정하며,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기술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 ○ 실무기술인은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실무기술인의 총 인원수는 최대 20인으로 제한하며, 낙찰자로 선정되면 입찰에 참여한 실무기술인에 한하여 과업에 참여할 수 있다.(실무기술인 전체의 중복기간을 합산한 후 실무기술인수로 나눈값을 평가)					
				구 분	200%미만	200%~250%미만	250%~300%미만	300%~350%미만	350%이상
				점 수	1.0	0.9	0.8	0.7	0.6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용역으로, 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2. 가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재(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 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젊은 기술인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용역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tr> <td style="width: 60%;">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 당해 용역 전체 참여인원수×100)</td> <td style="width: 10%;">5% 이상</td> <td style="width: 10%;">3% 이상</td> <td style="width: 10%;">1% 이상</td> </tr> <tr> <td>가점</td> <td>0.2점</td> <td>0.15점</td> <td>0.1점</td> </tr> </table>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 당해 용역 전체 참여인원수×100)	5% 이상	3% 이상	1% 이상	가점	0.2점	0.15점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 당해 용역 전체 참여인원수×100)	5% 이상	3% 이상	1% 이상						
가점	0.2점	0.15점	0.1점						

○○-○○ 도로00공사 ○○설계용역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202○. ○○.

업 체 명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건설엔지니어링의 특성, 내용 및 범위, 용역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시행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내에 시행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중 유사 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 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건설엔지니어링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

1.3 건설엔지니어링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노선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 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 예산절감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각 분야(도로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 2.1과 연계하여 건설엔지니어링의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 해당 사업수행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관련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상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첨부 2.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지표

구분	배점	지 표
수	1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뛰어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답변
우	0.9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우수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해 누락사항이 없고, 보통보다 우수한 경우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고려 및 확인사항을 제시한 답변
미	0.8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처 요구사항 누락사항 없고,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모두 언급 되었으나, 일반적인(보편적인) 범주를 제시한 답변
양	0.7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부분적인 누락사항이 있음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답변
가	0.6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부실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누락사항이 50%이상인 경우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과 동떨어진 매우 부실한 답변

사업능력 평가자료 작성요령

1. 평가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과업수행조직 및 업무분담 계획표

[사업책임 기술인 1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 각 1인(도로 및 공항, 토목구조, 토질·지질, 시공, 교통, 환경)으로 작성]

나. 참여기술인에 대한 이력 및 경력, 실적, 교육이수, 전차용역 사항(양식1)

다. 유사건설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양식2)

라. 업무정지 등(양식3-1)

마. 재정상태 건실도 등 회사의 내용(양식3-2)

바.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양식4-1)

사. 재정상태 검토보고서(양식4-2)

아. 가점(양식5)

자. 업무중복도(양식6)

차. 참여기술인 현황(양식7) - 공문에 첨부

카. 자기평가서(양식8) - 별권 2부 제출 및 평가서 책자에 첨부

2. 제출부수 : 2부(원본 1부, 부분 1부) 및 전자파일(CD) 1부 제출

3. 규 격 : A₄(210mm×296mm)

4. 지 질 : 백상지(80g/m²)

5. 인쇄방법 : 공판인쇄 등

6. 제 본 : 양면좌철(무사 무선철)

7. 평가자료의 CD 작성 방법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스캔파일을 작성요령의 1항 가.부터 차.항까지 각 10개 폴더를 생성하여 해당되는 스캔파일을 저장하여 CD에 담아 제출

* 관련근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부 고시 제2023-821호) 제5조 제1항

<작성예시>

이름	수정된 날짜	유형	크기
가. 과업수행조직 및 업무분담 계획표	2016-03-02 오후...	파일 폴더	
나. 참여기술자에 대한 이력 및 경력, 실적	2016-03-02 오후...	파일 폴더	
다.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2016-03-02 오후...	파일 폴더	
라.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등	2016-03-02 오후...	파일 폴더	
마. 재정상태 건실도 등 회사의 내용	2016-03-02 오후...	파일 폴더	
바.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2016-03-02 오후...	파일 폴더	
사.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2016-03-02 오후...	파일 폴더	
아. 가점	2016-03-02 오후...	파일 폴더	
자. 업무중복도	2016-03-02 오후...	파일 폴더	
차. 참여기술자 현황	2016-03-02 오후...	파일 폴더	
카. 자기평가서	2016-03-02 오후...	파일 폴더	

<양식 1>

□ 참여업체 및 기술인 현황

○○-○○ 도로○○공사(○공구) ○○설계

업체명 (공동참여 업체)	대표이사 (공동참여)	담당자	연 락 처		참 여 기 술 자			비고 (업체명)
			TEL	FAX	분 야	성 명	생년월일 (남/여)	
() ()					사업책임			
					도로및공항 분야책임			
					토목구조 분야책임			
					토질·지질 분야책임			
					도로및공항 분야참여			
					토목구조 분야참여			
					토질·지질 분야참여			

□ 참여기술인의 이력 및 경력

○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위	
연 령		최종학교 (학위)		전 공	
자격증 (분야및종류)			취 득 일		
해당분야실적 (최근10년)	건		도로분야전체경력	년 월	
상훈 및 자격정지사실	내용 :		년 월 일		

○ 해당분야 실적(최근 10년간 : ○년.○월.○일 ~ ○년.○월.○일)

구분	사업명	사업 개요	계약 금액	용역기간 년 월 ~ 년 월 (개월)	참여기간 년 월 ~ 년 월 (개월)	참 여 당 시		발주처	비고
						소속회사	참여분야		

- 경력 및 실적증빙서류에서 발췌하여 기재하고, 증빙서와 상이한 사항이 없도록 할 것.
- 참여분야는 도로 및 공항, 토목구조, 토질·지질 등으로 구분표기
- 각종 증빙서류는 사본첨부

□ 교육이수실적(최근3년간)

성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기관	기술사자격보유여부
		년 월 일	~ 년 월 일		

※교육이수증명서 사본 첨부

□ 전차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현황

○ 책임기술인(사업 책임기술인, 도로 및 공항분야 책임기술인)

참여분야		건설엔지니어링명	계약금액	건설엔지니어링기간	참여기간	사업개요	비고
당해건설엔지니어링	전차건설엔지니어링						

※ 작성요령

- 본과업에 대한 전차건설엔지니어링(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및 기본설계)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 다음 증빙서류를 첨부
 - 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계약서 사본 첨부
 - 나. 구분란에는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로 구분하여 작성
 - 다.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이 있는 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당해회사 소속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제출
 - 라.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도급계약서 사본 및 당해회사 도금액 증빙자료, 도급비율 명시(당해 발주처의 실적증명서 첨부)
 - 마.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하도급인 경우 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발주처 승인서 첨부

<양식 2>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실적

○ 기본설계,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명	도로의구분 (시설물명)	사업개요	건설엔지니어링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참여비율	발 주 처	비고

○ 기본계획조사, 타당성조사

건설엔지니어링명	도로의구분 (시설물명)	사업개요	건설엔지니어링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참여비율	발 주 처	비고

○ 철도(일반,고속,도시), 공항(활주로 및 유도로) 건설공사 건설엔지니어링사업

건설엔지니어링명	시설구분	사업개요	건설엔지니어링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참여비율	발주처	비고

※ 작성요령

가. 공동도급 실적을 기재시는 공동도급회사별 지분율을 비고란에 표기하고 공동도급계약서 사본첨부

나. 건설엔지니어링실적과 관련하여 발주청에서 확인한 실적증명서 등 증빙 첨부(실적증명서에 용역개요 필히 기재)

※ 해외실적 중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계약 대행한 것은 실적 미인정

○ 전차건설엔지니어링내용(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구 분	건설엔지니어링명	계약금액	건설엔지니어링기간	사업개요	참여비율	비고

※ 작성요령

- 본 과업에 대한 전차건설엔지니어링(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및 기본설계)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 다음 증빙서류를 첨부
 - 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계약서 사본 첨부
 - 나. 구분란에는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로 구분하여 작성
 - 다.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도급계약서 사본 및 당해회사 도급액 증빙자료, 도급비율 명시(당해 발주처의 실적증명서 첨부, 실적증명서에는 상기 표의 내용을 확인할수 있어야 함)
 - 라.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하도급인 경우 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발주처 승인서 첨부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평가

업체명	건설엔지니어링명	사업개요	건설엔지니어링기간	건설엔지니어링평가점수	건설엔지니어링평가년도	발 주 처	비고

※ 작성요령

- 가. 최근 3년내(공고일 기준) 5개청에서 시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를 작성
- 나.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결과는 발주청에서 확인한 증빙 첨부
- 다. 주관사와 공동참여사를 각각 구분하여 작성

<양식 3-1>

□ 영업정지(업무정지) 등 현황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대표자	건설엔지니어링명	제재받은내용			참여기술인				비고
		제재명	기간	사유	분야	성명	참여기간	제재명 및 사유	

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업정지(업무정지)를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한다.

나. 참여기술인은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 또는 징계처분을 받는 기간 및 내용을 기재한다. 또는 업무정지 등 처분을 받아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계류중인 사항 및 취소처분사항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다. 참여기술인중 발주청 임직원으로서 최근 1년간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항을 기재한다.

※ 가, 나항에 대하여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계류중인 사항 및 취소처분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기재하고,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 부실벌점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누계평균부실벌점	비고

※ 세부사항은 배점표 참조 및 증빙서류 첨부

<양식 3-2>

□ 재정상태 건설도 등 회사의 내용

○ 회사의 경영내용

회 사 명			
주 소		전 화 번 호	
설 립 년 도		도로부문	○년○월~○년○월
자 본 금		사업시행기간	(개월)

○ 재정상태 건설도

구 분	내 용		비 고
회 사 명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재무결산기준일			
등 급	회 사 채		
	기 업 어 음		
	기 업 신 용 도		
등 급 평 가 일			
등 급 유효 기 간			
신 용 평 가 기 관			

※ 작성요령

- 가. 지식경제부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증(또는 등록증) 사본 및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회원수첩 사본과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대행자 지정서 사본을 첨부한다.
-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첨부한다.
- 다.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각 업체 모두 작성

<양식 4-1>

□ 기술개발실적(건설신기술,특허,실용신안을 각각 구분 작성)

일련 번호	개발 연도	보호기간	건명	등록권자	출원자	참여 지분율	등록 단계	건 수	비고
		건설신기술은 유효기간을, 특허,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을 기재							

※ 작성요령

-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신기술 또는 건설기술에 관련된 특허 및 실용신안중 설계목적에 적합한 것으로서 등록권자가 참여회사인 것만 기재
- 나. 등록단계에는 특허등록결정, 등록유지결정, 선등록 등을 기재
- 다. 비고란에는 당해용역에 적합한 사유를 기재
- 라. 신기술지정증서,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증사본 또는 등록원부 사본 첨부
- 마. 최초 출원인 확인자료

□ 투자실적(최근3년간)

(단위 : 백만원)

기술개발투자금액	건설부문총매출액	비 고

- 가. 기술개발 투자는 최근 3년간을 작성하고 연도별 합계 및 3년 평균 기재
- 나. 회사설립 년수가 3년 미만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로 평균함
- 다. 본 과업에 공동으로 참여한 경우는 각 구성원별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평가
- 라. 제출서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같은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투자금액으로 신고된 금액으로서 증빙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하며, 건설부문 총매출액, 건설기술개발 및 투자액은 최근3년간을 합산하여 기재
- 마. 실적이 없는 회사도 양식에 “실적없음”을 기재
- 바.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건설기술진흥법 제7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를 제출, 별지 양식1 참조)

□ 활용실적(건설신기술,특허,실용신안을 각각 구분 작성)

연번	개발 연도	보호 기간	건명	등록 권자	출원자	공사 발주처	적용 공사명	공사 기간	기성 시점	활용 금액	비고

※ 작성요령

- 가. 보호기간 :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을, 특허,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경과 기간을 기재
- 나. 적용 공사명 : 해당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설계에 적용되어 공사에 반영된 공공 공사명을 기재
- 다. 기성시점 : 해당기술의 공사기성완료시점을 기재
- 라. 활용금액 : 해당기술이 공사에 반영되어 기성완료된 금액(도금액 기준)을 기재
- 마.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관계법령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바.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별지 양식 1 : R&D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 >

제202 - ○○호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안)

신 청 인	업체명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				
	사업자번호		팩스				
	증명서용도		제출처				
연구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과제유형			
	연구과제명			총연구기간			
	연 구 내 용 (요약)						
	기 업 부 담 금 내 역	구 분	참여 형태	연구수행(참여)기간	기업부담금(현금)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p>상기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p> <p>년 월 일</p> <p>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인)</p>							

<양식 4-2>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구 분		설계등 용역업자				000000회사	
면 번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 백만원)			
부채비율				타인자본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매출액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차감전)		총매출액	
총자본회전율				총매출액		총자본	
기술개발투자비율 (최근3년)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최근년도 실질자본금 (자산총계-부채총계)				자산총계		부채총계	
최근년도 순유동자산 (유동자산-유동부채)				유동자산		유동부채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기 타							

※ 상기내용은 위 기재회사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함)나 세무사(세무사법 제2조제7호에 의해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함)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이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사무소 :

주 소 :

연락처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

(인)

<양식 5>

가점 평가항목 관련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및 젊은 기술인 참여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 별도 첨부

<양식 6>

□ 업무중복도

○ 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구 분	사업명	사업 개요	사업 기간	계약 금액	중복 기간 (개월)	발 주 청	책임분야 및 참여기간		중복 비율 (%)
							책임 분야	참여 기간	
사업 책임기술인 (000)									
분야별 책임 기술인	도로 및 공항분야 (000)								
	토목구조 분야 (000)								
	토질분야 (000)								

※ 작성요령

- 가. 업무중복내용은 당해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참여중인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해당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기관(발주청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조회과정에서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당해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한다.
- 나. 타회사에 하도급을 준 경우는 ()로 내용을 기재
- 다. 사업명란은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등 도로의 종류와 노선명을 명기할 것. 단, 하천, 철도, 지하철, 공항관련 분야의 경우는 사업명을 간략히 표기
- 라. 업무중복도 평가기준상의 평가대상용역 전체를 기재하여야 함.
- 마. 업무중복도 작성자료는 파일로 별도 제출

<별지 양식 1 : 해외설계 수행실적 증명서 >

해외설계 수행실적 확인서

I.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용역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영문)			(발주국)	
3) 발주관성격	정부(), 공공기관(), 민간()	4) 계약주체	본사(), 지사(), 현지법인(), 지분율(%)		
5) 신청자	5-1) 회사명	5-2) 면허번호	5-3) 대표자		
	(대표)	5-4) 영업소재지	5-5) 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도도급여부	원도급(), 하도급()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단독도급()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감리(), 건설관리(), 타당성조사(), 기타()				
II. 용역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분	계약자 (대표)	계약자	계약자		
1) 회사명					
2) 대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		
4) 전체용역규모 (본란에는 주요 물량을 기재하고 필요시 세부 물량은 별지 제6호서식을 활용)					
III. 붙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p>위와같이 용역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p> <p>해외건설협회장 귀하</p> <p style="text-align: right;">주소 : 회사명 : 대표 : (인)</p>					
확인자					
용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용역명		해외건설협회장(인)			
발주처					

<별지 양식 2 :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 >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 확인서

I.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청인	1-1) 회사명		1-2) 대표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II. 해외설계용역					
1) 공사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주국)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단독도급() ※ 해당란에 표				
III. 참여기술인 현황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사업책임기술인	○○○	111111-111111	○○○기술사	○○○○○○	개월
2) ○○분야책임기술인	○○○				개월
3) ○○분야책임기술인	○○○				개월
4) ○○분야책임기술인	○○○				개월
5) ○○분야책임기술인	○○○				개월
IV. 붙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p>위와같이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p> <p>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p> <p style="text-align: right;">주소 : 회사명 : 대표 : (인)</p>					
확인자					
용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발주처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공사명					

<양식 7> - A4형

□ 참여기술인 현황

○ 총괄표

구 분	성명	생년월일 (남/여) (연령)	회사 직위	학력 (학위)	전공	자격증		경력		비고
						종류	취득일	총경력	도로 분야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 기술인	도로 및 공항분야									
	토목구조 분야									
	토질·지질 분야									
분야별 참여 기술인	도로 및 공항분야									
	토목구조 분야									
	토질·지질 분야									

※ 작성요령

기술인의 자격·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확인을 받은 것만 인정
평가함.(A4 형으로 작성)

<양식 8>

자 기 평 가 서

- 회사명 : ○○엔지니어링/○○엔지니어링
 - 참여기술인 : 사업책임 ○○○, 도로책임 ○○○, 구조책임 ○○○, 토질책임 ○○○
 도로참여 ○○○, 구조참여 ○○○, 토질참여 ○○○, 시공참여 ○○○,

1. 항목별 평가점수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총 계		100		
1. 참여 기술인	합 계		50	
	사업책임 기술인	계	15	
		등 급	3 (3)	
		경 력	4 (4)	
		실 적	5 (8)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3(-)	공 란
	분야별 책임 기술인	계		19
		도로 및 공항	소 계	7.6
			등 급	1.6
			경 력	2.8
			실 적	3.2
		구조	소 계	5.7
			등 급	1.2
			경 력	2.1
			실 적	2.4
		토질	소 계	5.7
			등 급	1.2
경 력			2.1	
실 적	2.4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1. 참여 기술인	분야 참여 기술인	계	14		
		도로	소 계	5.6	
			등 급	1.6	
			경 력	2.0	
			실 적	2.0	
		구조	소 계	4.2	
			등 급	1.2	
			경 력	1.5	
			실 적	1.5	
		토질	소 계	4.2	
			등 급	1.2	
			경 력	1.5	
	실 적		1.5		
교육훈련	인원 및 기간	1.0 (2.0)			
전차용역	참여형태 및 기간	1.0 (0.0)			
2.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계	15			
	건 수	6 (7)			
	금 액	6			
	전차건설엔지니어링	1 (0)			
	건설엔지니어링 수행평가	2			
3. 신용도	계	10			
	업무정지,부실별점		7		
	재정상태건설도	신용평가등급	3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15			
	개발실적	2			
	투자실적	10			
	활용실적	3			
5. 업무중복도	계	10			
	책임기술인	3			
	분야별책임기술인	4			
	분야별참여기술인	2			
	실무기술인	1			
6. 가점	신규고용률				
	젊은 기술인 참여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2. 평가점수 산출근거

구 분		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 참여 기술인	합 계				
	사업책임 기술인	계			
		등 급			
		경 력			
		실 적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공 란	
	분야별 책임 기술인	계			
		도로 및 공항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구조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토질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구 분			평가점수	산출근거	
1. 참여 기술인	분야 참여 기술인	계			
		도로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구조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토질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교육훈련		인원 및 기간			
전차용역		참여형태 및 기간			
2.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계		
			건 수		
			금 액		
			전차건설엔지니어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평가		
3. 신용도	계				
	업무정지,부실별점				
	재정상태건설도	신용평가등급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개발실적		
			투자실적		
			활용실적		
5. 업무중복도			계		
			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		
6. 가점			신규고용률		
			젊은 기술인 참여		

※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는 발주청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 시 자기평가서를 우선으로 하여 평가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함.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바람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예시: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마시고, 개별 경력에 환산계수를 반영한 단위 경력을 산출 기재하고, 단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
(예시: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의 경력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취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별첨자료로 제출)

<양식 9>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건설엔지니어링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분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분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전화번호 :

(인)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전화번호 :

(인)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표지]

국토교통부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국도O호선 000공사 실시설계용역]

2024. ○ ○ .

업 체 명